



CITY of POOLER
— GEORGIA —

공공 공지
제6조 보장 안내

조지아 주 풀러 시(City of Pooler)는 「1964년 민권법 제6조(Title VI)」, 「1987년 민권 회복법(Civil Rights Restoration Act)」 및 관련 법률과 규정을 모든 프로그램과 활동에서 완전히 준수하는 것이 정책임을 공지합니다. 풀러 시의 정책은 미국 내 누구도 인종, 피부색, 출신 국가, 성별, 연령 또는 장애를 이유로 연방 재정 지원을 받는 당사의 프로그램이나 활동에 참여하는 데서 배제되거나, 혜택을 거부당하거나, 기타 방식으로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제6조에 따라 불법적인 차별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공식적인 민원을 제기할 권리가 있습니다. 민원은 주장된 차별 행위가 발생한 날로부터 또는 차별 행위에 대한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서면으로 제6조 코디네이터인 니콜 존슨(Nicole Johnson)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제6조 차별 민원 양식은 시청에서 직접, 시 웹사이트(www.pooler-ga.gov), 전화 (912)748-7261 또는 이메일(njohnson@pooler-ga.gov)을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